

1. 정 관



정 관

제정	1998. 12. 23.
개정	1999. 2. 23.
개정	2000. 12. 19.
개정	2001. 12. 27.
개정	2004. 2. 26.
개정	2005. 12. 27.
개정	2011. 3. 22.
개정	2011. 4. 21.
개정	2011. 4. 29.
개정	2017. 2. 20.
개정	2017. 10. 19.
개정	2019. 10.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본 회의 영문표기는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S.C.S.W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공덕동)에 둔다. (개정 2001.12.27., 2017.02.20.)

제4조(사업) 본 회의는 제2조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정보·상담센터의 운영
 12. 구사회복지협의회육성 및 협의조정
 13. 푸드뱅크마켓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서울특별시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7.10.19.]

- 제5조(중앙협의회 및 구협의회와의 관계) ① 본 회의는 중앙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협의 수행한다. (개정 2004.2.26.)
- ② 본 회의와 구사회복지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본 회의는 구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2.26.)
- ③ 본 회의는 본 회의와 구 사회복지협의회간의 사회복지에 관한 지역별 의견 수렴 및 관련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구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2.26.)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사회복지협의회장
 2.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대표자 및 시설의 대표자 (개정 1999.2.23., 2017.10.19., 2019.10.15.)
 3. 서울특별시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등 단체의 대표자 (개정 1999.2.23., 2017.10.19.)
 4. 제2호 시설의 대표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로 한다. (신설 2019.10.15.)
- ② 개인회원은 서울시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7.10.19.)
- ③ 본 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19.)

제8조(회원의 가입 등) ① 본 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 가입이 된다. (개정 2004.2.26., 2011.4.29., 2017.10.19., 2019.10.15.)

1. 제7조제1항제1호의 구사회복지협의회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신설 2019.10.15.)
 2.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신설 2019.10.15.)
 3.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5.)
- ② 본 회의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17.10.19.)
- ③ 본 회의는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0.19.]

제9조(회원의 임의탈퇴) 본 회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서를 본 회의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개정 1999.2.23., 2017.10.19.)

제10조(회원의 당연탈퇴)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

1. 소속 단체의 해산 및 파산
2. 사망
3. 삭제

[제목개정 2017.10.19.]

[전면개정 2017.10.19.]

제11조(제명) ①본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1. 삭제 (2017.9.19.)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본 회의 정관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0.19.)

②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10일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 의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하여 제명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제12조 삭제 (2017.10.19.)

제13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4조(권리행사 방법) 본 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15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및 각종 회의 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4인 (개정 2017.10.19.)
3. 이사 22인(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00.12.19., 2017.10.19.)

4.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1. 회장은 회원이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3. 이사는 대의원 중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 균형있게 선임하여야 한다.
 4.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자로서 본 회의 대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5.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는 본 회의 대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개정 2019.10.15.)
 6. 회장을 제외한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규정으로 정한다.
- ②본 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 ③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②삭제

③삭제

④ 삭제 (2017.10.19.)

⑤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8조의2(사임과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①본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7.10.19., 2019.10.15.]

[전문개정 2019.10.15.]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7.10.19., 2019.10.15.]

제19조의1(임원의 해임) ①본 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본 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임원이 해임되더라도 회원의 자격은 유지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9.]

제20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본회는 회장(대표이사)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단,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7.10.19.)

④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회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인감날인하는 일
3. 본 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회원 및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 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9.)

[전문개정 2017.10.19.]

제21조(임원의 대우) ①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회장) ①본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②명예회장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개정 2011.4.29.,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3조(총회) ①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의1(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0.19.]

제23조의2(대의원의 구성) ①제7조에 의한 회원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인원으로 구성한다.

1. 구사회복지협의회장(당연직)

2. 제7조제1항제2조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6명 이내 (개정 2019.10.15.)

3. 제7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의 회원 10명 이내

4. 직능위원회 소속 협회(연합회)의 회원 각 3명 (개정 2019.10.15.)

②회원이 아닌 외부추천이사 및 감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7.10.19.]

제23조의3(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의 자격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회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10.19.]

제23조의4(대의원의 선임) 제23조의2에 의해 본 회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17.10.19.]

제23조의5(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본조신설 2017.10.19.]

제23조의6(대의원의 권리·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거권 및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하여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대의원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대의원은 회비 및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2017.10.19.]

제2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전면개정 2017.10.19.]

제25조(총회의 소집 등)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6.2.16., 2017.2.20.)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26조(총회소집 특례) ①회장은 재적 임원 및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임원 및 재

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감사 2인이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본 회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정 2019. 10.15.)

②총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신설 2017.10.19.)

[전면개정 2017.10.19.]

제28조 삭제 (2017.10.19.)

제29조(총회 의사록) ①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한 대의원 5인이 기명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의장을 제외한 대의원 4인은 당해 총회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9.10.15.)

③회장은 의사록을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0.19.]

[전면개정 2017.10.19.]

제2절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회의 구성) 본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 가.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다.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
4. 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위원회 및 직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회원의 회비, 임원부담금 및 찬조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면개정 2017.10.19.]

제32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 정기총회 전에 개최한다. (개정 2017.02.20.)

③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

의 연서에 의한 요청으로 소집한다.

④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⑤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9.)

제33조(이사회 의 개 의 와 의 결 정 조 수) ①이사회는 본 회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 의 하 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 한 다.

②이사회 의 의 사 는 대 리 인 이 나 서 면 결 의 에 의 할 수 없 다. (신 설 2017.10.19.)

[전면개정 2017.10.19.]

제33조의1 삭제 (2017.10.19.)

제33조의2(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은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 인감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회 의사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9.]

제34조(회장단회의) 본 회의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회장단회의에서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4.2.26., 2011.4.29.)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 (개정 2017.10.19.)

2. 삭제 (2017.10.19.)

3.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회장단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4.29.)

제5장 전문위원회

제35조(전문위원회) ①본 회의는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의1(사회복지직능위원회) ①본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자격이 있는 직능협회(연합회) 대표자들로 구성·운영하는 사회복지직능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사회복지직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19.]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36조(자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19.)

제37조(재산의 관리) ①자산을 매도·증여·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경비와 유지방법) 본 회의 경비는 정부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2.16.)

제2절 회계

제39조(회계의 구분 등) ①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19.)

②본 회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4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1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의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2.26., 2017.10.19.)

제42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의 회장은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개정 2017.10.19.)

제44조(사무국) ①본 회의 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둔다. (개정 2006.2.16.)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총괄한다. (개정 2006.2.16.)

제45조(상근직원) ①사무국에는 필요한 상근직원을 둔다.

②상근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0.19.]

[전문개정 2017.10.19.]

제8장 삭제 (2017.10.19.)

제46조 삭제 (2017.10.19.)

제9장 수익사업

제47조(수익사업) ①본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1. 삭제 (2011.4.21.)

2. 출판사업 (신설 2006.2.16.)

3. 조사연구용역사업 (신설 2006.2.16.)

4. 삭제 (2017.10.19.)

5. 삭제 (2017.10.19.)

②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승인을 받아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10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8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2.16., 2017.10.19.)

제4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19.)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의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17.10.19.)

제11장 공고방법

제51조(공고의 방법) ①본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회의 게시판 또는 본 회의 기관지에 신는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관련신문에 신는다.

제12장 보 칙

제52조(준용법규) 본 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9.)

제53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6.)

부 칙 (제정 1998.12.23.)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업무 및 사업과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여왔던 각종의 업무와 사업 및 예산은 이 정관에 따라 본 회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9.2.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업무 및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여 왔던 각종의 업무와 사업은 이 정관에 따라 본 회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개정 2000.12.19.)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27.)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02. 26.)

이 정관의 개정 및 신설조항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2.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3.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4.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4.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2.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25조 및 제32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10.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제18조제1항의 임원의 연임제한은 2017년 1월 1일부터 선임한 임원에 적용한다.

③(임원의 경과조치) 1. 제17조제1항제4호의 외부추천이사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단, 선임시까지 이사정원에서 제외한다.
2. 대의원이 아닌 외부추천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참관은 가능하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무국 직제규정 제3조, 별표 1을 개정한다.

부 칙 (개정 2019.10.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의5(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